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1.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8.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도하석 의원 등 8명(이선주, 박종길, 서보영, 정순옥, 이진환, 손범구, 이영빈)
- 발의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6.(수) ~ 11. 15.(금)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국민운동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국민운동조직 육성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및 회원의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4. 11. 6. ~ 11. 17.)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를 근거로 추진해 오던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대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 국민운동조직 현황

구 분	설립일자	하부조직(洞)
대구광역시달서구새마을회	1988. 3. 5.	협의회 21 부녀회 23
바르게살기운동달서구협의회	1989. 4. 1.	위원회 23
한국자유총연맹달서구지회	1989. 4. 17.	위원회 19

- 주요 내용으로 우리구가 이미 시행 중인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중복지원 금지와 예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운동조직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